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22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 안호영·이학영·이원택

어기구 • 윤준병 • 주철현

정을호 · 박희승 · 소병훈

박홍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·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·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~ ③	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
	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
	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
	런된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
	들어야 한다.